

관리번호  - ( **년 귀속)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(소명자료 제출서)**  
 ([ ]예정신고, [ ]확정신고, [ ]기한 후 신고, [ ]소명자료 제출서 )

1. 양도인 (신고인)	성명	주민등록번호	내·외국인	[ ]내국인 [ ]외국인
	전화번호	전자우편 주소	거주구분	[ ]거주자 [ ]비거주자
	주소	거주지국 국 적	거주지국코드 국 적 코드	

2. 양수인	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	전화번호	양도인과의 관계
	주식1				
	주식2				
	주식3				

3.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

구분	①종목명	②종목코드	③국내외 구분	④종류코드	⑤양도유형	⑥양도일	⑦취득유형	⑧취득일	⑨취득유형별 주수
주식A									
주식B									
주식C									

4. 양도소득금액 계산

구분	양도가액		필요경비			양도소득금액			
	⑩주당 양도가액	⑪양도가액 (⑨×⑩)	⑫주당 취득가액	⑬취득가액 (⑨×⑫)	⑭기타 필요경비	⑮합 계 (⑪-⑬-⑭)	⑯비과세	⑰과세대상 (⑮-⑯)	⑱기신고 등
합계									
주식A									
주식B									
주식C									

5.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

⑩양도소득 기본공제	⑳과세표준 (⑰+⑱-⑩)	㉑세율	㉒산출세액 (㉑×㉒)	㉓전자신고 세액공제	㉔가산세	㉕가신고·결정·경정세액	㉖납부할 세액 (㉒-㉓-㉔)	㉗분할세액	㉘납부세액 (㉖-㉗)

6. 필요경비 상세내역

구분	6-1. 취득가액				6-2. 기타 필요경비			
	합계	매입가액 상세내역			합 계	증권 거래세	농특세	기 타
		매입가액	매입가액 구 분	매입가액 산출방법				
합계								
주식1								
주식2								
주식3								

7. 가산세 상세내역

합 계	무신고 · 과소신고	납 부 지 연	기 타

8.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: "1. 양도인(신고인)"부터 "3.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"까지 작성하고 소명자료 첨부하여 제출

신고인(양도인)은 「소득세법」 제105조(예정신고)·제110조(확정신고)·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(기한 후 신고)에 따라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(양도인)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  
신고인(양도인) (서명 또는 인)

※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(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).

첨부서류 1. 매매계약서(또는 증여계약서) 사본, 2.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, 3.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.

### 작성 방법

#### 1. 양도인(신고인)

- '성명'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(full name)를 적습니다.
- '주민등록번호'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,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, 상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- '내·외국인'란 및 '거주구분'란의 괄호 안에 "√"표시를 하고,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(국적코드)과 거주지국(거주지국코드)을 적습니다.

#### 2. 양수인

- 주식을 양수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-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: 타인, 배우자, 자, 부모, 형제자매, 조부모, 손자·손녀 등

#### 3. 양도한 주식등 상세내역

- ① 종목명: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 종목코드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,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(ISIN코드)를 적으며 해당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.
- ③ 국내/외 구분: 국내주식이면 1, 국외주식이면 2를 적습니다.(국외주식은 「소득세법」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)
- ④ 종류코드: 주식등의 종류에 따라 부여된 코드를 적습니다.

종류	비상장주식등 주권등 비상장법인					상장주식등 주권등 상장법인					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- 비사업용 토지	국외주식등		
	중소기업 소액주주	중소기업 대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	중소기업 소액주주	중소기업 대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		중소기업	중소기업 외 법인	
코드	31	34	32	35	33	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	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	코스피 42 코스닥 22	코스피 45 코스닥 25	코스피 41 코스닥 23	51	52	62	61

※ 국외주식등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.

- ⑤ 양도유형: 매매인 경우 1,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2를 적습니다.
- ⑦ 취득유형: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.

취득유형	매매	공모	유상증자	무상증자	합병	증여	상속	출자	기타
코드	1	2	3	4	5	6	7	8	9

- ⑨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: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,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.

#### 4. 양도소득금액 계산

- ⑩ 주당양도가액: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- ⑪ 양도가액: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,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⑫ 주당취득가액
  -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(상속·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)을 적습니다.
  -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,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·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.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, 해당정부 평가액, 매매사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.
- ⑬ 취득가액: 주식등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( '6-1. 취득가액 상세내역' 합계란 금액)
- ⑭ 기타 필요경비: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적고 ( '6-2. 기타 필요경비' 합계란 금액),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'합계'란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#### 5.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

- ⑮ 양도소득기본공제: 거주자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 합니다.
- ⑯ 세율: 아래 표와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여 주식등의 종류에 맞는 세율을 적습니다.

종류	비상장주식등 주권등 비상장법인					상장주식등 주권등 상장법인					기타자산 중 주식등 양도분 - 비사업용 토지	국외주식등		
	중소기업 소액주주	중소기업 대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	중소기업 소액주주	중소기업 대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소액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	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		중소기업	중소기업 외 법인	
세율	10%	20~25%	20%	20~25%	30%	10%	20~25%	20%	20~25%	30%	누진	누진	10%	20%

- ⑰ 산출세액: ⑮란의 과세표준에 ⑯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.
- ⑱ 전자신고세액공제: 납세자가 직접 「국세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8 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(20,000원)을 적되, 공제세액이 ⑰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.
- ⑳ 가산세: '7. 가산세 상세내역'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.
- ㉑ 분납할 세액: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 하려는 경우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.
 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
  -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
#### 6. 필요경비 상세내역

- '6-1. 취득가액'의 '매입가액 구분'란에는 실지거래가액, 매매사례가액, 환산가액,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'6-1. 취득가액'의 '매입가액 산출방법'란에는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매입가액 산정방법(개별법, 선입선출법, 후입선출법, 총평균법 등)을 적습니다.
- '6-1. 취득가액'의 '기타'란에는 매입가액을 제외하고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'6-2. 기타 필요경비'의 '기타'란에는 증권거래세와 통통세를 제외하고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3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7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 산정 시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.

#### 7. 가산세 상세내역

- '무신고·과소신고'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 불이행에 따른 무(과소)신고 가산세(일반무신고 20%, 부당무신고 40%, 일반과소신고 10%, 부당과소신고 40%)를 계산하여 적습니다.
- '납부지연'란에는 산출세액에 기한 내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[1일 2.5/10,000(2019. 2. 11.까지 1일 3/10,000)]를 계산하여 적습니다.